

노숙자 및 부랑인 대책의 원칙과 과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보통 사람’들이 노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얼마나 겪어야 될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노숙자들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출현하기는 했지만, 노숙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준비’ 내지 ‘악화’ 과정이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자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취업을 하거나 가출한 다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다가 IMF 이후 일거리가 급감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구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주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불안정한 생활형편으로 인해 주거사정도 날로 악화되어 왔으며, 노숙 직전에는 대개 월세나 일세방, 건설현장의 합바, 기숙사 등을 진전했다. 더구나 불의의 신체적, 경제적 사고는 가뜩이나 취약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의 재기의욕을 꺾어 놓기도 했다.

따라서 노숙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보아 우리 사회의 빈곤화 내지 빈민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노숙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예방’의 문제이며, 그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노숙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대책이 필요하다. 노숙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망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뜻이므로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육체적인 질환치료에서부터 심리상담과 치료, 알코올 의존증 치료, 사회성 훈련, 직업교육 등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함으로써만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외에는 대안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인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노숙자 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를 ① 귀가 및 가족지원대상자, ② 독립생활지원대상자, ③ 재활지원대상자, ④ 치료보호대상자, ⑤ 요양 및 시설보호대상자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① 응급보호, ② 현장보호, ③ 재활보호와 같이 특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노숙자라고 할 수 있는 쪽방 생활자들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더 이상 오갈 데 없다고 ‘공인된’ 부랑인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노숙자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